



## 영광군계획시설(장사시설)사업 토지 등의 세목(변경)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영광군 고시 제2022-104호(2022. 11. 10.)로 고시된 “영광군계획시설(장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고시합니다.

2023. 4. 27.

### 영 광 군 수

####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522번지 일원
- 면적 : 92,593㎡
- 개발기간 : 2022년 ~ 2025년
- 사업시행자 : 영광군수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조서 : 붙임조서 참조

3. 토지 세목 변경사유 : 분할 측량 결과 및 누락 지장물 반영

4. 기타 사업내용은 기 고시된 내용과 같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영광	군남	대덕	산266-1	임	607	101	영광군	-	-	-	-	변경없음
2	영광	군남	대덕	산266	임	1,674	18	광주이씨 ○○종중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489	-	-	-	당초
				산266-2	임	17	17	광주이씨 ○○종중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489	-	-	-	변경
3	영광	군남	대덕	505-*4	전	82	82	영광군	-	-	-	-	변경없음
4	영광	군남	대덕	505-3	도	260	129	영광군	-	-	-	-	변경없음
5	영광	군남	대덕	505-2	전	712	712	영광군	-	-	-	-	변경없음
6	영광	군남	대덕	508-1	도	139	139	영광군	-	-	-	-	변경없음
7	영광	군남	대덕	501-1	도	180	116	영광군	-	-	-	-	변경없음
8	영광	군남	대덕	511-1	도	41	41	남○우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417	조○정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413	저당권	변경없음
9	영광	군남	대덕	1627	도	2,663	222	국토 교통부	-	-	-	-	변경없음
10	영광	군남	대덕	499-1	도	411	284	영광군	-	-	-	-	변경없음
11	영광	군남	대덕	499	전	466	10	영광군	-	-	-	-	변경없음
12	영광	군남	대덕	499-4	전	18	18	영광군	-	-	-	-	변경없음
13	영광	군남	대덕	498-3	전	194	194	재정 경제원	-	-	-	-	변경없음
14	영광	군남	대덕	498-1	도	378	42	영광군	-	-	-	-	변경없음
15	영광	군남	대덕	499-2	전	683	683	영광군	-	-	-	-	변경없음
16	영광	군남	대덕	508	전	2,046	2,046	김○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655	-	-	-	변경없음
17	영광	군남	대덕	509	전	1,898	1,898	남○숙	영광군 군남면 광암로 93-47	-	-	-	변경없음
18	영광	군남	대덕	511	전	1,916	1,916	남○용	영광군 군남면 광암로 417	-	-	-	변경없음
19	영광	군남	대덕	510	전	1,484	1,484	영광군	-	-	-	-	변경없음
20	영광	군남	대덕	510-1	전	1,359	1,359	남○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95 주공아파트203-404	신용보 증기금	대구 동구 침단로 7	가압류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21	영광	군남	대덕	512-1	답	2,750	2,750	영광군	-	-	-	-	변경 없음
22	영광	군남	대덕	512-5	구	169	122	삼○사	-	-	-	-	당초
				512-8	구	155	155	삼○사	-	-	-	-	변경
23	영광	군남	대덕	512-4	답	2,010	2,010	영광군	-	-	-	-	변경 없음
24	영광	군남	대덕	1626	도	489	489	국토 교통부	-	-	-	-	변경 없음
25	영광	군남	대덕	522	답	3,656	3,656	영광군	-	-	-	-	변경 없음
26	영광	군남	대덕	523-6	답	1,540	1,540	영광군	-	-	-	-	변경 없음
27	영광	군남	대덕	512-6	구	20	20	농림축산 식품부	-	-	-	-	변경 없음
28	영광	군남	대덕	523-4	답	142	142	영광군	-	-	-	-	변경 없음
29	영광	군남	대덕	523-5	답	2,202	2,202	영광군	-	-	-	-	변경 없음
30	영광	군남	대덕	523-3	구	66	66	농림축산 식품부	-	-	-	-	변경 없음
31	영광	군남	대덕	524-2	구	119	119	영광군	-	-	-	-	변경 없음
32	영광	군남	대덕	524-1	전	1,993	1,993	남○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95 주공아파트203-404	신용보증 기금	대구 동구 침단로7	가압류	변경 없음
33	영광	군남	대덕	1625	도	2,658	445	국토 교통부	-	-	-	-	변경 없음
34	영광	군남	대덕	1620-8	천	117,393	939	국토 교통부	-	-	-	-	변경 없음
35	영광	군남	대덕	519	대	688	688	영광군	-	-	-	-	변경 없음
36	영광	군남	대덕	520	답	5,316	5,316	영광군	-	-	-	-	변경 없음
37	영광	군남	대덕	521	답	1,418	1,418	영광군	-	-	-	-	변경 없음
38	영광	군남	대덕	산123-3	임	221,782	45,918	영광군	-	-	-	-	변경 없음
39	영광	군남	대덕	산123-1	임	1,000	1,000	광주이씨 ○○공과 종중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547	-	-	-	변경 없음
40	영광	군남	대덕	522-1	답	10,126	10,126	영광군	-	-	-	-	변경 없음
41	영광	군남	대덕	512-3	답	1,663	140	임○철 외3인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419	임○도	군남면 대덕리497	지분4분의1	당초
				512-7	답	140	140			임○남	군남면 대덕리419	지분4분의1	
												임○풍	군남면 대덕리419

○ 지장물건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군남면 대덕리	509	감나무	묘목	180주	남○숙	영광군 군남면 광암로 93-47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영 광 군



### 1. 조례제명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군민중심의 편리한 법제서비스 제공
-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사각지대 개선)

### 3. 주요내용

- 조례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및 명확화 제고
  - 조례에 규정된 사업별 주요사항(지원액, 지원방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사항(신청기한 및 절차) 등을 조례 별표 신설로 한눈에 규정
-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자격 확대(제5조제2항)

- (현행)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중인 여성
- (변경)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신생아 양육비 전입세대 지원 근거 규정 신설(제10조제1항)
  - (현행) 전입세대 지원 불가
  - (변경) 12개월 미만 출생아가 보호자와 함께 전입 시 양육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제9조제3호)

#### 4. 전부개정(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3. 4. 26. ~ 2023. 5. 16.(20일간)

####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인구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전화) 061-350-4673 / FAX) 061-350-5622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7.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4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 및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에게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2. “난임시술비”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임산부 교통카드”란 임산부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카드를 말한다.
4. “양육비”란 신생아 또는 12개월 이하 영유아(이하 “출생아”라 한다)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출생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출산축하용품 구입비”란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산후조리비”란 출산한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2장 결혼 및 임신 지원

**제4조(결혼 및 임신 등의 지원)** 군수는 결혼 및 임신을 장려하기 위해 예

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장려금
2. 난임시술비
3. 임신부 교통카드
4. 그 밖에 군수가 결혼 및 임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 및 임신 등의 지원대상)** ①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혼인신고를 마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단, 부부 모두가 충족한 경우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1.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2.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3. 재혼가정의 경우 초혼인 자
- ②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대상은 군에 임신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로 한다.

**제6조(결혼 및 임신 등의 지원내용)** 결혼 및 임신 등 지원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별표1과 같다. 단, 난임시술비 지원은 모자보건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결혼 및 임신 등의 지원신청 및 처리절차)** ①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임신부 교통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의 주소 여부 및 혼인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읍·면장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 확인란에 날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또는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제외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기간 내 관외로 전출한 경우. 단, 지원대상자의 배우자가 제5조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기간 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1회에 한해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계속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대상자가 지원기간 내 이혼을 한 경우. 단, 이혼 후 같은 사람과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계속 지원 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3장 출산 및 양육 지원

**제9조(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 군수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양육비
2.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 산후조리비
4.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대상)** ① 양육비 지원대상은 군에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단, 입양아의 경우 입양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로 한다. 단,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출생아와 함께 전입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은 제1항 본문과 같다.

③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아의 산모로 한다. 단,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아의 출생신고를 마친 미혼모는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제11조(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내용)** ① 출산 및 양육 등 지원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일의 다음 달부터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금 및 전입일 이전 기간에 대한 분할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12조(양육비 자녀순위 결정)** ① 출생아의 순위 자녀는 출생아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에 한정하여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아로 결정한다. 단, 다태아의 경우 첫째아, 둘째아 순으로 결정한다.

③ 입양 및 재혼 가정의 경우 출생아의 순위 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1. 보호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신생아 출생일 기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을 것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상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제13조(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신청 및 처리절차)** ①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지급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아기 탄생 기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출생아의 출생(입양)신고 사항, 보호자 및 순위 자녀의 주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보호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 확인란에 날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중지 또는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제외한다.

1. 보호자 또는 출생아가 지원기간 내 관외로 전출한 경우. 단,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보호자 외 다른 보호자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지원기간 내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보호자로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계속 지원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제외사유 발생 이후 재전입한 경우. 단, 12개월 이하 출생아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 할 수 있다.
3. 출생아가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단, 국외 체류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4.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4장 보칙

**제15조(지역화폐 지급)**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읍·면장의 책무)** 읍·면장은 혼인신고서 및 출생신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사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 대장 비치)** 군수는 사업별 지원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결혼 및 임신 등의 지원내용(제6조 관련)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기한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일		
결혼장려금	500만원	분할지급	1회차	200만원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2회차	15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달의 15일	
			3회차	150만원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달의 15일	
임산부 교통카드	30만원	○ 티머니 교통카드 지원(1회)		당일 발급	임신 ~ 분만 후 6개월 이내	

**【별표2】**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내용(제11조 관련)**

구 분 사업명	지 원 내 용				신청기한
	자녀순위	지원액	지 원 방 법	지급일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 일시금 100만원 ○ 분할금 400만원(월 20만원 × 20개월)	(일시금)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분할금) 일시금이 지급된 달의 다음달부터 매 월 15일	출생아 출생일(입양/전입) 로부터 90일 이내
	둘째아	1,200만원	○ 일시금 120만원 ○ 분할금 1,080만원(월 30만원 × 36개월)		
	셋째아~ 다섯째아	3,000만원	○ 일시금 150만원 ○ 분할금 2,850만원(월 50만원 × 57개월)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	○ 일시금 255만원 ○ 분할금 3,245만원(월 55만원 × 59개월)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출생아당	30만원	○ 일시금 30만원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산후조리비	출생아당	100만원	○ 일시금 100만원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장려금 지원 이행서약서

본인은 영광군에서 지급받은 결혼장려금에 대하여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하며, 최초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한 경우나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 지원이 중단됨을 인지하고 허위로 지원금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원된 결혼장려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체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주소 :

영광군수 귀하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 영광군 출산서비스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					

출생아	성명 ※ 출생아 모두 기재		주민등록번호	
-----	-------------------	--	--------	--

가족 사항 (산모 기준)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에 [ ]아니오
	배우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신생아 양육비	신청구분 [ ]출생 [ ]입양 [ ]전입(12개월 미만 출생아)
	보호자 (출생아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부 [ ]모 [ ]부모 모두 [ ]그 외( ) ※ 부모 모두인 경우 해당되는 경우, <b>신청인을 기준으로</b> 지원대상자 결정
	※ 출생아 순위 자녀는, 출생아 출생일 기준 군에 <b>1년 이상(합산)</b> 거주한 이력이 있는 자녀에 한정하여 자녀순위에 포함
	자녀 순위 출생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다섯째아 [ ]여섯째아 이상 출생아 순위 자녀의 군내거주기간 [ ]첫째아(년 개월) [ ]둘째아(년 개월) 담당공무원 (성명) (직급) [ ]셋째아(년 개월) [ ]넷째아(년 개월) 확인란 (서명 또는 인)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 ]에 [ ]아니오	
영광맘 산후조리비 [ ]에 [ ]아니오 ※ <b>부모 모두 6개월 이상</b> 영광군에 주민등록 둔 산모에게 지원	
다둥이(셋째)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 ]에 [ ]아니오 ※ <b>부모 모두 6개월 이상</b> 영광군(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우리 아기 탄생 기념증 발급 [ ]에 [ ]아니오 ※ [별지 제7호] 서식 추가 작성 필요/ 제작 완료 후 우편 발송	

지급 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출생아와의 관계	참고사항
----------	-----	-------	------	----------	------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영광군수 귀하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활용제공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리기관 확인사항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순위 자녀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군수가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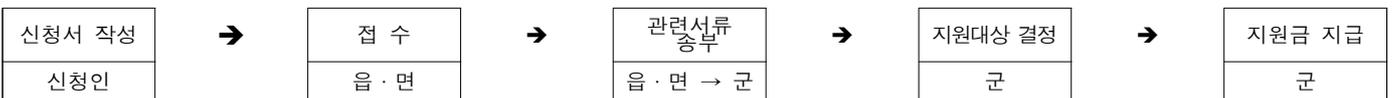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신생아 양육비 계좌 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생아와 관계	연락처
	도로명주소			

출생아	성명	생년월일
-----	----	------

계좌변경 신청내역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출생아와의 관계
기 존				[ ]부 [ ]모 [ ]본인
변 경				[ ]부 [ ]모 [ ]본인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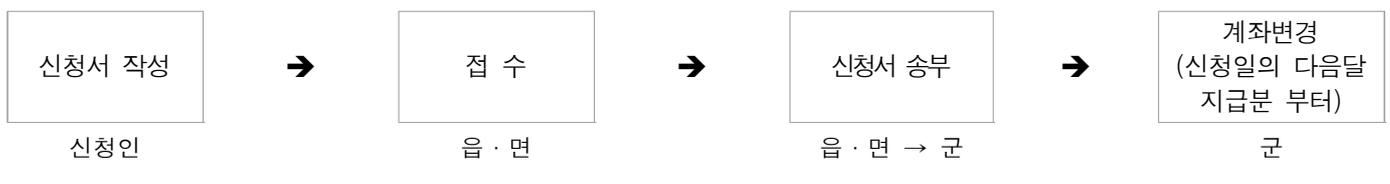
영광군수

귀하

### 제 출 서 류

1. 보호자(부,모) 신분증 사본 각 1부.
2. 변경계좌 통장사본 1부.

### 처 리 절 차



## 우리 아기 탄생 기념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출생아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성 별	
	태 명		태어난 시각	
	혈 액 형		띠	
	몸 무 게		키	
	엄마이름		아빠이름	
	부모님 소망			

### 유의사항

- ※ 아기주민등록증은 민원편의시책으로 발급하는 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제출서류 : 아기사진 1매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 처리절차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영 광 군



### 1. 조례명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 폐지이유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존치 불필요

### 3. 입법예고기간 : 2023. 4. 26. ~ 2023. 5. 16.(20일간)

### 4. 폐지(안) : “붙임”

## 5. 의견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 (참조 : 인구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전화) 061-350-4673 / FAX) 061-350-5622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4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3. 4. 28.

## 영 광 군 수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 4. 28.(금)
2.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항

지 역	결정·공시 필 지 수	공 시 가 격	비 고
영 광 군	220,300	각 필지별 m <sup>2</sup> 당 가격	

3. 공시가격 열람방법 : 영광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4.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이의가 있을시
  - 가. 기 간 : 4. 28. ~ 5. 30.(33일간)
  -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다. 제 출 처 :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 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식에 작성 후 방문, 인터넷, 팩스 제출
5. 이의신청처리 :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여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 26.까지 그 결과를 통지함.